

이 자료는 2007년 12월 28일
보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고 자 료

2005.3.

건설교통부

보도 참고자료 목록

1. 국토균형발전시책 및 수도권발전방안 추진일정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3.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 별책
4. 기업도시 건설
5. 수도권 발전방안 : 별책
6. 전략환경평가제도 개요
7. (가칭) 경관법 제정 개요
8. 도로, 하천, 신도시의 친환경적인 개발 및 관리
9. 간선급행버스체계(BRT)
10. 버스 준공영제 도입
11. 교통카드 호환성 제고
12. 지하철 승강장 안전시설

참고자료 1 : 국토균형발전시책 및 수도권 발전방안 추진일정

구 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발전방안
사업내용	연기·공주지역에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형 복합도시 건설	수도권 소재 약 180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11개 시도에 혁신도시를 건설	민간기업 주도로 산업·관광 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춘 기업도시 건설	수도권을 1중심(서울) 2거점(인천·수원)과 4대 특성화 벨트'의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행정중심도시 등 분산 시책과 연계하여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선별적으로 개혁
지금까지 추진현황	- '05. 3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제정	-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법적 근거 마련 -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정책 설명 및 의견 수렴	- '04.12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정·공포 - '05. 1 : 기업도시 시범사업 추진계획 고시 - '05. 2 : 시행령·시행규칙안 입법예고(~'05.3.4) - '05. 2 : 시범사업 신청기한 연장 ('05.2.15→'05.4.15일)	- '04. 8 : 수도권 발전대책 발표 - '04.10~'05. 2 : 수도권 순회 토론회 개최 및 수도권 발전대책 보완

구 분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 혁신도시	기업도시	수도권 발전대책
향후 추진 일정	'05		4월 : 이전대상기관 및 시 · 도별 배치안 확정	4월 :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마감	4월 : 수도권 발전방안 확정
		5월 : 예정지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 수립		5월 : 시범사업 선정	5월 : 규제개혁(단기)을 위한 법령 정비 (산업집적활성화법시행령)
					6월 :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수도권발전대책 구체화)
			8월 : 지자체와 이전기관간 이전협약 체결 및 혁신도시 입지 선정		
		12월 : 토지 등 매입 착수		12월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12월 : 규제개혁(단기)을 위한 법령 정비(수도권법령 등)
	'06	1월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설치(차관급) 12월 : 기본계획 · 개발계획 수립	12월 : 지구지정, 실시계획 수립	12월 : 실시계획 승인 및 착공	12월 : 정비발전지구제도 등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령 개정)
		'07년이후 : 실시계획 수립 착공,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입주 개시	'07년 : 착공		'07년이후 : 현행 3개 권역을 지역특성과 발전정도를 감안하여 개편
	'07 이 후			'10년 : 기업체 이전, 주민 입주 개시	
			'12년 : 공공기관 이전 완료 및 혁신도시 완공		

참고자료 2 :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3.2,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국무총리 및 재경부 등 12부4처2청과 그 소속기관을 이전

☐ 추진 일정

추진단계	주요 사업
준비단계	특별법 제정('05.3),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5), 이전계획 수립('05.5)
계획단계	기본계획·개발계획 수립('05.6~'06.12), 실시계획 수립('05. 9~'07.3), 용지매입 착수('05.12), 건설청 설치('06.1)
건설단계	부지조성 공사 착공 및 청사 건축 착수
이전단계	행정기관의 단계적 이전 및 주민 입주 개시

☐ 주요 추진과제

① 예정지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05.5)

- 토지 세목조사 및 기초조사를 거쳐 지정기준을 확정하고
공청회·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을 지정
- 정부투자기관중에서 사업수행능력·개발사업 경험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예정지역과 함께 고시

② 행정기관 이전계획의 수립('05.5)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이전기관·방법·시기·예산 등이 포함된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을 수립

③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05.6~'06.12)

- 건설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는 기본계획과 부문별·단계별 개발방안이 포함된 개발계획의 수립에 착수
-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모범도시로 건설되도록 도시 개념설계를 현상공모로 실시(7~11월)

④ 실시계획 수립('05.9~'07.3)

- 기본계획·개발계획에 맞추어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

⑤ 보상대책 수립 및 토지매입 착수('05.12)

- 예정지역 고시후 사업시행자는 토지·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기본조사(5~7월), 주민설명회 및 보상계획 열람(8~10월), 감정평가(11월)등을 거쳐 토지매입 착수(12월)

⑥ 난개발 및 투기방지 대책 마련('05.3~12)

-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대책 수립에 착수

-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특별법에 의해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등 부동산안정 대책 시행
- 관계기관과 지자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불법 토지 형질변경, 투기행위, 위장 전입을 통한 건물 신축 등을 지속 단속

[7]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 수립('05.8~'06.12)

- 건교부장관은 예정지역·주변지역과 그 영향권역에 대해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착수
- 광역도시계획에는 체계적인 토지이용관리, 환경보전, 교통 계획, 광역시설 정비방안 등이 포함

참고자료 4 : 기업도시 개발제도 개요

□ 입지대상 : 낙후지역, 지역클러스터 형성지역 우선배려

- 수도권·광역시(郡지역은 허용) 제외
- 대규모사업 집중지역(예: 행정중심도시 인근지역) 제외
- 낙후도 1·2등급지 우선배려, 6·7등급지 제외

□ 최소면적 및 시행자의 직접사용비율 (산업투자 의무)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	혁신거점형
최소면적	500만㎡	330만㎡	660만㎡	330만㎡
가용지중 산업용지 비율	40% 이상	30% 이상	50% 이상	30% 이상
산업용지중 직접사용 비율	30% 이상	20% 이상	50% 이상	30% 이상

※ 혁신거점형은 예외적으로 165만㎡ 규모로 개발 가능

※ 도시개발시 가용지는 통상 50% (나머지는 도로 등 공공용지)

※ 산업형 500만㎡ 개발시, 직접사용규모는 30만㎡(전체의 6%) 수준

□ 개발이익 환수 : 낙후등급(7등급)별로 25~85% 환수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환수율 (시군구 數)	25% (34개)	35% (34개)	45% (34개)	55% (33개)	65% (33개)	75% (33개)	85% (33개)

□ 시행자는 도시조성비 20% 이상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 기존기업이 직접시행할 경우에는 도시조성비 20% 이외에 자기자본, 매출총액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시행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구지정 취소, 사업 시행자 대체지정, 조성토지 처분권 환수 등을 부과

참고자료 6 : 전략환경평가(SEA) 제도

□ 추진배경

- 증대되는 환경가치 중시성향과 국민의 참여욕구에 대비하고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통한 SOC사업의 효율적 추진

※ 전략환경평가(SEA) :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 주요내용

- 직접적으로 환경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을 포함하지 않으며, 단지, 중장기 정책방향, 추진전략 등을 담은 정책적·지침적 성격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 예시 : 국토종합계획, 주택종합계획 등 24개 계획

- 계획 추진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환경친화적 대안을 검토, 모색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도입('04.12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 규정(훈령) 제정)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와의 차이점

- 환경영향평가는 입지 및 노선, 개발사업이 확정된 후 사업시행 과정에서 환경훼손 저감방안을 강구, 시행하는 목적
- 사전환경성 검토는 개발계획 수립 및 사업확정 전에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문제 예방목적

□ 향후 추진계획

- '05년 1/4분기에 「전략환경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년내 계획수립 예정인 6개 계획에 대하여 실시

※ 대상계획 :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댐건설장기계획, 중기교통시설투자계획, 공항개발중장기종합계획

참고자료 7 : (가칭) 경관법 개요

□ 필요성

- 각 지자체가 아름다운 국토개발, 격조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경관계획 및 조례제정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경관 조성·관리 및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지원 시스템 정비

※ 선진국 사례 : 일본(경관법), 프랑스(풍경법, 도시계획법), 영국(도시계획법), 독일(풍경법)

□ 주요내용(안)

- 각 지자체별로 실효성있는 경관계획, 경관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건물소유자 등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경관협약을 체결하여 건축물의 형태, 색채 등을 규율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도시의 아름다운 시가지 경관 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경관중점구역 지정·관리 촉진
- 도로, 하천 등 시설물에 경관요소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지역특성별(관광지, 해안, 농촌) 경관 형성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의 자발적인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사업 선정,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전신주 지중화, 옥외광고물 제도와 연계 방안 강구

참고자료 8 : 도로, 하천, 신도시의 친환경적 개발 및 관리

□ 도로는 「친환경 도로지침(환경부와 공동제정)」에 따라 건설

- 보전지역은 원칙적으로 우회, 환경영향 최소화 기법 활용
 - * 노선은 환경, 문화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함께 선정
- 생태통로(36개소)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 하천은 「친환경 하천설계기준」에 따라 건설·관리

- 생태 우수지역은 하천보전구역 지정(주민과 보전계획 수립)
- 친환경하천 조성사업(총 24개 중 금년 3개 완료)과 댐 생태공원 조성사업(3개댐중 금년 1개 완료)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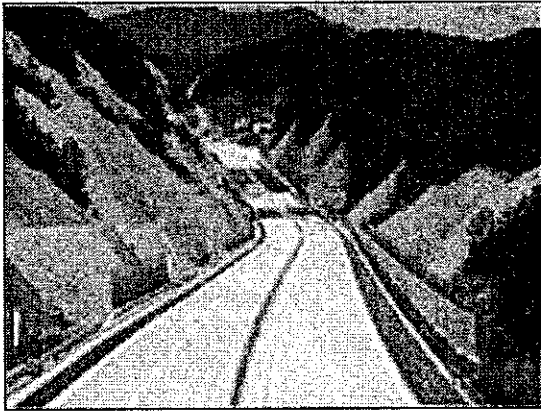
□ 도시내 공원·녹지공간 확충

- 도시개발시 일정비율 이상 공원·녹지 확보를 의무화
- 사유지를 공공녹지로 활용하는 녹지협약제도를 도입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후 관리방안 개선
 -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협의매수하여 녹지공간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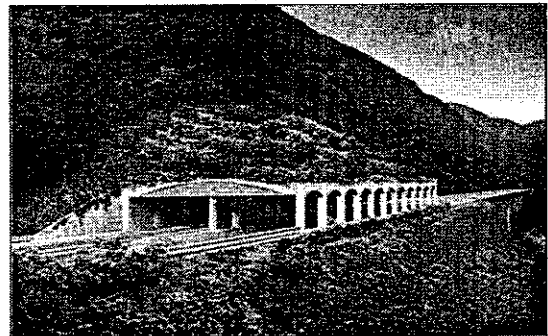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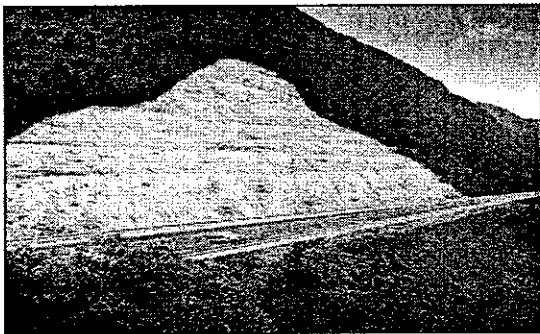
□ 모든 신도시는 「지속가능한 계획기준」에 따라 개발

- 주요 경관축에 20~30m 이상의 녹지대를 조성하고, 1인당 공원면적을 10㎡(국내 도시평균 4.8㎡) 이상 확보
- 태양열, 풍력 등 자연친화적인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녹지와 연계하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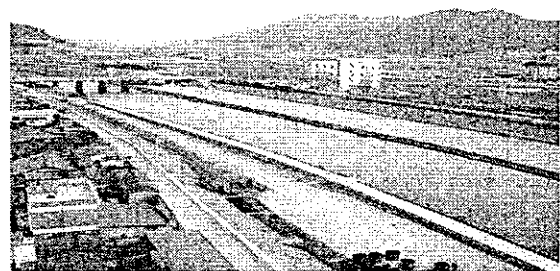
《 양쪽 큰 비탈면 발생시 터널로 통과 》



《 한쪽 큰 비탈면 발생시 피암터널 설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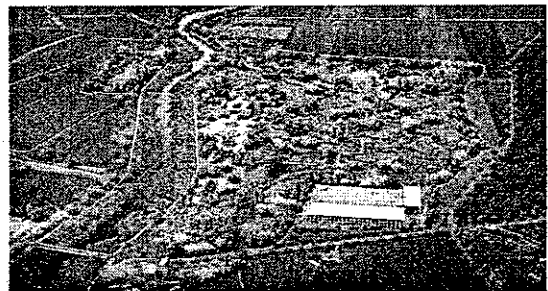


《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 사례 : 함평군 함평천 》



과거(1986년) 고수부지

현재(2005년) 콘크리트 호안



나비 생태도시 관광수익 창출

미래(2009년) 자연하천, 생태계 복원

참고자료 9 :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BRT(Bus Rapid Transit)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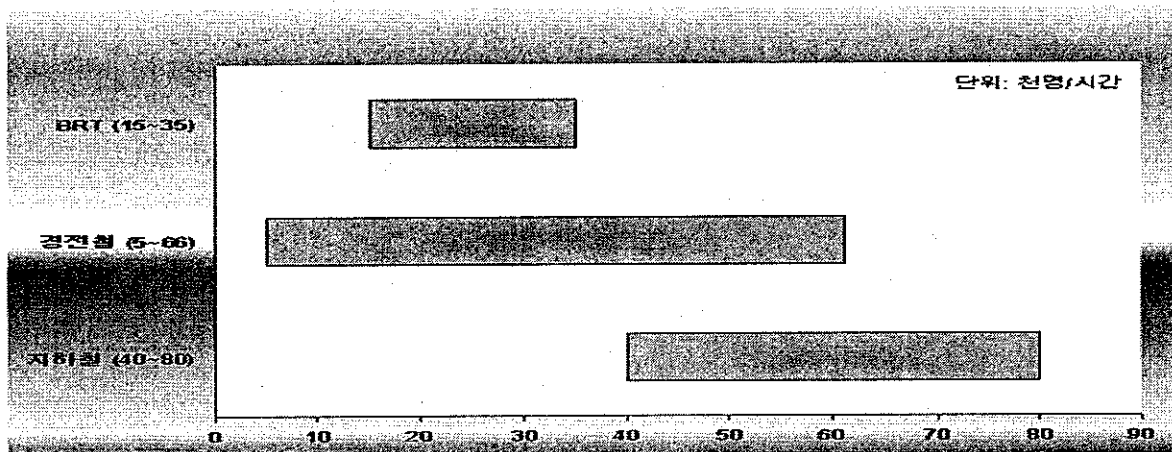
- 버스를 고급화·대형화하고 전용차로를 주행하게 하여 운행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을 대폭 향상시킨 새로운 대중교통시스템으로 「땅위의 지하철」이라고도 불림

□ BRT의 등장배경

- 버스·지하철 등 기존 대중교통수단들의 문제점 대두
 - 지하철은 수송효율은 높으나 과도한 건설비와 건설기간의 장기화
 - 버스는 비용이 저렴하나 정시성, 속도, 승차감 등 서비스의 질이 낮아 승용차이용자들의 이용기피

□ 대중교통수단간 수송능력 및 건설비 비교

- 수송능력 범위



※GAO,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 Development Policy 자료, 2003

○ 국내외 건설비용

	건설비(GAO, USA, 2003)	국내건설비 사례
BRT	2 ~ 44억/km	없음(상급 : 50억-100억 추정)
경전철	100 ~ 963억/km	300 ~ 480억/km
지하철	405 ~ 2,027억/km	1000억/km 내외

※ GAO 및 국내자료, 2003

□ BRT 도입시 기대효과

○ 통행시간 감소와 탑승객 증가

사례도시	통행시간 감소	탑승객 증가
피츠버그	50%	80~100%
LA	25%	27~41%
마이애미	-	70%
호놀룰루	25~45%	-
시카고	25%	17%

※ Institute for Transportation & Development Policy 자료, 2003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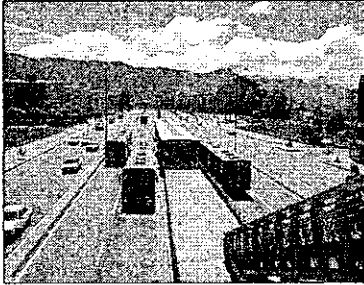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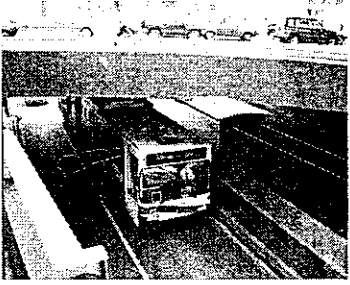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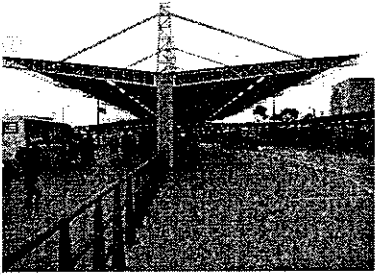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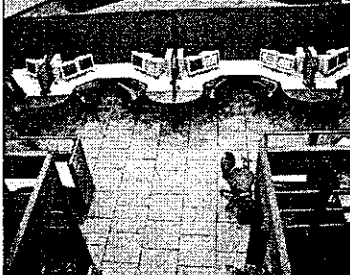
- 수도권 대중교통협의회 구성('03.12.24)
- 근거법령마련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수도권 22개 노선확정(540.7km)

○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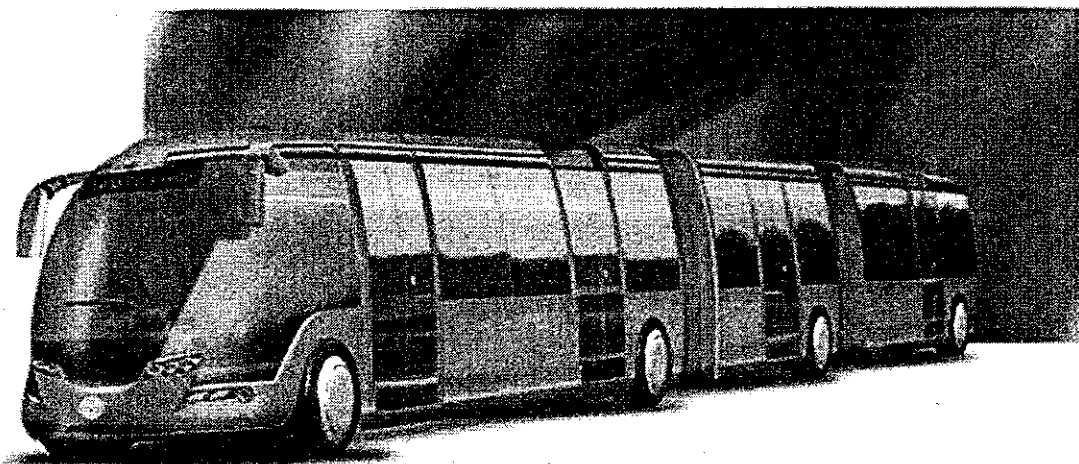
- 시범사업
 - 사업명 : 국지도 23호선(풍덕천~수서) BRT 구축사업
 - 사업규모 : 18.8km('05~'07년) 1,547.6억원(국고부담 : 364.5억)
- 확대실시 : 2012까지 수도권 21개 노선 521.9km구축

【참고자료】

○ BRT 구성요소

 <중앙버스전용차로>	 <입체교차로>	 <사전지불 가능한 정류소>
 <환승센터>	 <버스사령실(BMS)>	 <교통약자를 위한 수평승하차>

○ 개발중인 한국형 BRT 표준모델



【BRT차량으로 개발 구상중인 모델】 : 카본소재(철보다 10배 강함)
전용궤도와 일반도로의 혼합형 선로에 효과적인 Bimodal 구조

참고자료 10 : 버스 준공영제 추진

□ 버스 준공영제 개요

- 준공영제란 민영과 공영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수입금관리형, 노선관리형, 위탁관리형 등으로 구분

⇒ 서울시의 경우 수입금 공동관리, 노선관리를 서울시에서 담당하고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스템임 (결손분은 서울시에서 재정지원)

- 버스노선체계를 개편하고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버스산업에 대한 준공영제를 도입키로 함 (건교부방침, '04.6)

□ 6대도시 버스 준공영제 추진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실시예정
서 울	☐ 준공영제를 비롯한 대중교통체계개편 : '04.7.1. ☐ 2단계 대중교통체계개편 추진 중 (중앙차로제신교통카드 사업 확대 등) : '05.1.1	'04.7.1. 기 시행
부 산	☐ 버스·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개선사업 추진 ○ 표준원가 산정 용역 실시 : '05.6. 까지 ○ 버스중심 대중교통 시범운영 실시 : '06.12.까지	'07.1. 시행 예정
대 구	☐ 버스노선체계개편 등을 내용으로 '05.6.까지 연구용역 ☐ 용역시행 후 세부계획 수립·추진	'05.10.1. 시행예정
인 천	☐ 준공영제 시행 타당성 용역완료(인천발전연구원) : '04.12.	-
광 주	☐ 노사정위원회에서 준공영제 도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검토 ☐ 교통개발연구원에 연구용역 '05.4.결과 예정	'05.하반기 시행예정
대 전	☐ 운송원가 용역완료('05.12.) ☐ 노(임금, 복지)·사(적정이익률)와 협의 중	'05.1/4 시행예정

참고자료 11 : 교통카드 호환성 제고

□ 교통카드 운영개요

- '96. 7월 서울 시내버스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여 현재 9개의 교통카드사가 16개 시·도에서 사업(준비 포함)중

※ 교통카드 3,570만매, 단말기 37,690대, 충전소 6,926, 판매소 7,322

□ 호환성 제고 주요대책(안)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제고

- 고속도로, 철도, 수도권(서울시)간의 호환을 조속히 완료
- '07년까지 전국호환 완료를 목표로 '05년부터 전국호환 추진
 - 호환기술방법 : **【표준 SAM】** (보안응용모듈) 기반
 - 호환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호환 참여업체에 대한 지원강화
 - ⇒ 관할지역내에서 타 교통카드 업체에 우선하여 영업권 보호 등
- 후불카드(신용카드)의 사용을 확대하고 선불교통카드와 호환
- 주차장, 공원, 공항, 터미널, 시외버스, 택시 등에서도 교통카드를 사용할 있도록 사용대상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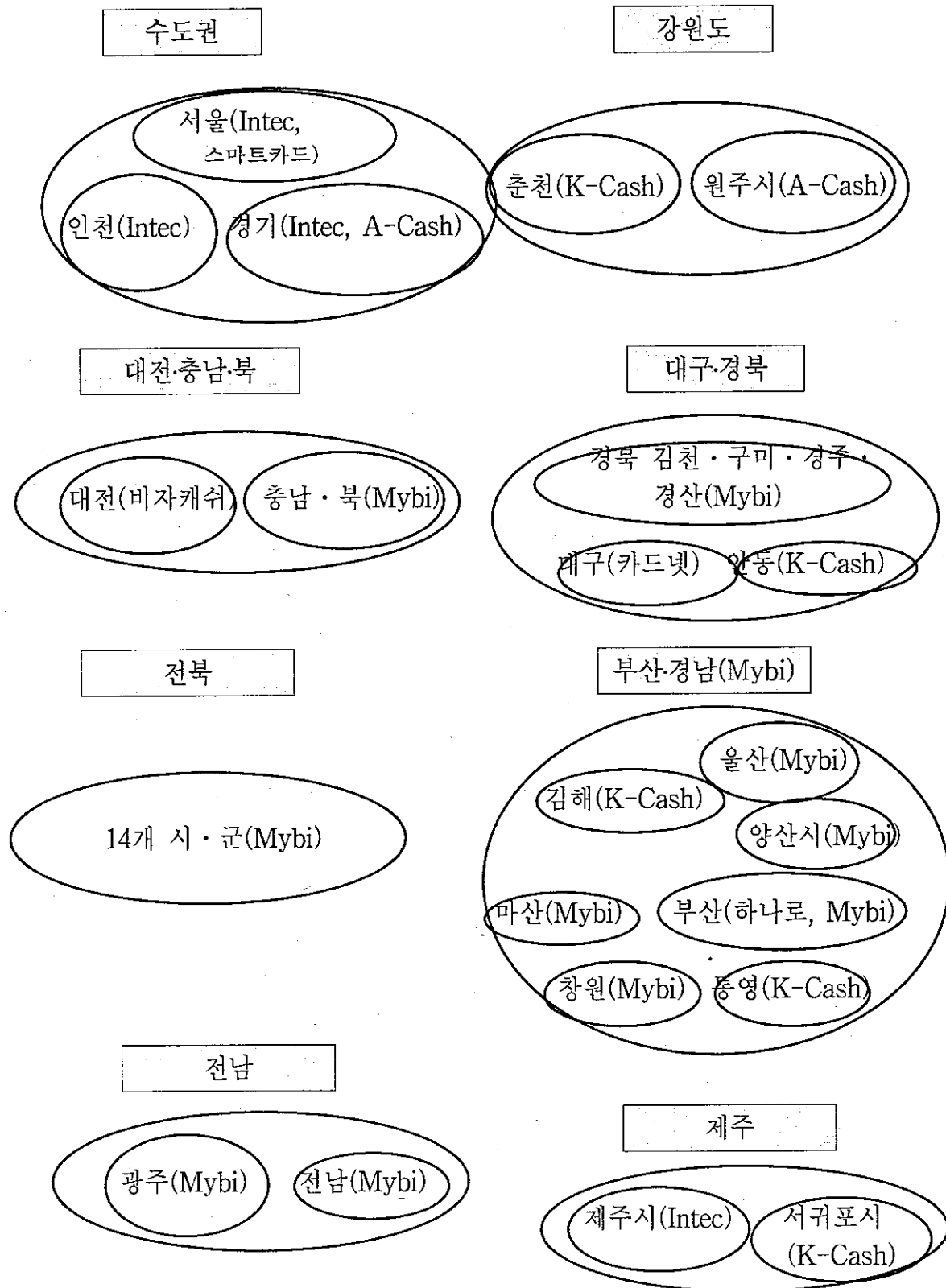
<참고자료>

전국교통카드운영현황

(2004. 11 현재, 단위 : 천매)

시·도	시행년도	보급량	이용현황	카드사
합계		35,771		
서울	버스 '96.7 지하철 '98.6	22,822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전구간	한국스마트 (EB카드)
부산	버스·지하철 '98.2	6,430	택시, 시내버스,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마이비
대구	시내버스 '00.11 지하철 '02.7	1,870	시내버스, 지하철	카드넷
인천	시내버스 '98.9 지하철 '99.12	630	시내버스, 지하철	EB카드 (A-cash)
광주	버스, 지하철 '04.10	250	시내버스, 지하철	마이비
대전	시내버스 '03.10	300	시내버스	V-cash
울산	시내버스 '02.9	411	시내버스	마이비
경기	시내버스 '96.5	1,225	수원 등 시·군 시내버스	EB카드 (북부: 마이비)
강원	원주버스 '01.6 춘천버스 '02.7	10022	시내버스	A-cash K-cash
충북	시내버스 '03.7	190	시내버스	마이비
충남	시내버스 '04.7	62	시내버스(금산군 제외)	마이비
전북	시내버스 '02.1	436	14개 시·군버스, 농어촌버스	마이비
전남	시내버스 '02.11	180	시·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이비
경북	시내버스 '02.2	89	구미, 경산, 김천, 경주, 안동	마이비 (안동: K-cash)
경남	시내버스 '02.7	610	창원·마산·진해·김해·양산·통영	마이비 (김해·통영 K-cash)
제주	시내버스 '98.2 '03.5	1404	제주 서귀포	EB카드 K-cash

전국 교통카드 권역별 도입 현황



※ Mybi, A-Cash, K-Cash : 전자화폐로, Mybi와 A-Cash는 같은 시스템으로 호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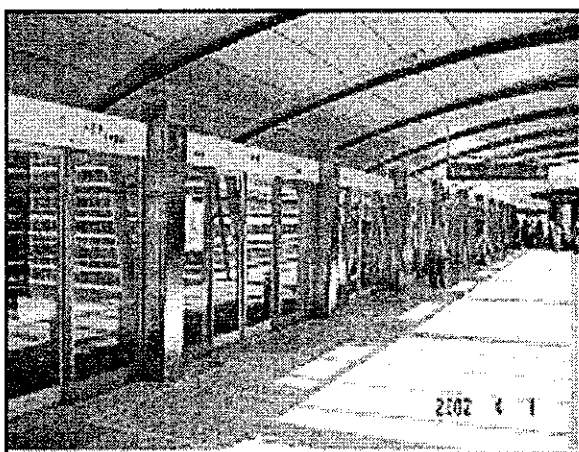
참고자료 12 : 지하철 승강장 안전시설



난간형 스크린도어



반 밀폐형 스크린도어



밀폐형 스크린도어



안전펜스